

「교외 연구용 실험기기 사용지원 규정」 신규조문대비표

2004. 3. 1. 제정 판 (시행 2003. 8. 14.) → 2006. 2. 28. 개정 판 (시행 2006. 3. 1.)

바뀜 8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88/compare?from=468&to=469> · 내려받은 때 2026. 10. 22. 오후 10:22:13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본 대학교 교수가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타 기관의 연구용 실험 기기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정액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1조(목적) 본 대학교 교수가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타 기관의 연구용 실험 기기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정액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지원 대상) 본 대학교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교내에 구비되어 있지 않는 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를 활용할 경우에 지원한다. 단,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제2조(지원대상) 본 대학교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교내에 구비되어 있지 않는 교외 연구용 실험기기를 활용할 경우에 지원한다. 단,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제3조(구성) 1. 교내 학술연구비 서식의 연구 계획서에 실험 기기 활용 방안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구지원과에 제출한다. 단,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별도의 연구 과제는 서식 2.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신청을 청구한 후 교수연구지원 위원회의 결의를 받도록 한다.	제3조(구성) ① 교내 학술연구비 서식의 연구계획서에 실험 기기 활용방안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구진흥실에 제출한다. ② 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신청을 청구한 후 교수연구진흥 위원회의 결의를 받도록 한다.
제4조(연구 계획서 제출 시기) 모든 연구 과제의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연구 계획서는 <u>사용 1개월 전에</u> 제출해야 한다(서식 2.2).	제4조(연구계획서 제출시기)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연구계획서는 <u>연구계획서 제출시</u> 제출해야 한다. ([서식]제7호)
제5조(지원금 신청) 1.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결의를 받은 후 소정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 지급을 서식 2.1에 청구한다. 2. 연구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에 <u>가시급</u> 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u>2주일</u> 내에 정산을 해야 한다. 3. 지원금을 신청한 이외의 다른 연구에 사용된 기기 사용료는 결과물과 사용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①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결의를 받은 후 소정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급을 ([서식]제8호)에 청구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한 이외의 다른 연구에 사용된 기기사용료는 결과물과 사용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 금액의 결정) 1.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료 지원은 교수 1인당 1년에 1,000,000원을 넘지 않는다. 2. 기타 연구 실적에 관련한 기자재 사용료 지원은 교수연구 지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지원금액의 결정) ①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료 지원은 교수 1인당 1년에 1,000,000원을 넘지 않는다. ② 기타 연구실적에 관련한 기자재 사용료 지원은 교수연구진흥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지원 제한 및 환수) 연구 기간이 종료된 후 10개월 이내에 연구 결과를 학술지 (교내외)에 게재하고 게재된 결과물을 연구지원과로 제출한다. 단,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한다.	제7조(지원제한 및 환수)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를 연구진흥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술지는 국내전문학술지 이상이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타) 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지원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기타) 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지원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 연구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외 연구용 실험기기 사용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구 활동"을 "연구활동"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원대상) 본 대학교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교내에 구비되어 있지 않는 교외 연구용 실험기기를 활용할 경우에 지원한다.

단,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교내 학술연구비 서식의 연구계획서에 실험 기기 활용방안을 반드시 기재하여 연구진흥실에 제출한다.

②교외 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 신청을 청구한 후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결의를 받도록 한다.

제4조의 제목 "연구 계획서 제출 시기"를 "연구계획서 제출시기"로 한다.

제4조 중 "연구 과제"를 "연구과제"로 하고, "연구 계획서는 사용 1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서식 2.2)."를 "연구계획서는 연구계획서 제출시 제출해야한다. ([서식]제7호)"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①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결의를 받은 후 소정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급을 ([서식]제8호)에 청구한다.

②지원금을 신청한 이외의 다른 연구에 사용된 기기사용료는 결과물과 사용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금액의 결정) ①연구용 실험 기기 사용료 지원은 교수 1인당 1년에 1,000,000원을 넘지 않는다.

②기타 연구실적에 관련한 기자재 사용료 지원은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제한 및 환수)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를 연구진흥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술지는 국내전문학술지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중 "교무위원회"를 "교수 연구진흥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